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 기준의 완화(안 제8조)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도 면허 어장면적 기준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리적 여건,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나. 업종별수협이 가진 어업권 행사의 예외 사항 명시(안 제19조)

수협 어업권은 어장 인접 지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수협이 정치망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중 어업권 행사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
다. “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8조) 자구 정비(안 제5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 8.)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규제심사 완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구별수협의”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로, “지구별수협 총회”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총회”로 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을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u>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u> 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 ----- ----- ----- ----- ---- <u>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u> ----- -----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구별수협</u>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u>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u> ----- ----- -----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③ ----- -----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

1.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2. -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3. -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 지구별수협 및 업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② 시·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4. (생략)

5. 관할 지구별수협(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종별수협 총회-----

제5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
 -- 업종별수협-----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51) 773 - 5519